

2018.03.27

한미 FTA 개정협상, 원칙적 합의도출

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



- 한미 양국은 3월 16일 제3차 개정협상 이후 26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.
- ※ 3월 중 제3차 개정협상(3.15~16), 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담(유선·대면), 4차례 한미 FTA 수석대표간 협의, 분야별 기술협 의(수시) 진행
-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 도출하였습니다.
- 또한 금번 한미 FTA 개정협약과 함께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협상도 합의 하였습니다.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대신 지난 3년 평균 수출량의 70%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였습니다. 이에 철강관세를 부과 받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수출면제국에 포함 되었습니다.

2018.03.27

개정협상 주요 결과

한국 측

- ① 투자자-국가 분쟁해결제도(ISDS) 관련, ② 투자자 남소방지, ③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, ④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, ⑤ 섬유 관련, ⑥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

미국 측

-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, 자동차 안전/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
 - ①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('21년 철폐) 에서 추가로 20년('41년 철폐) 연장
 - ② 제작사별로 연간 50,000대(현행 25,000대)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,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
 - ③ 연비/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('16-'20)하고, 차기 기준('21-'25)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
 - ④ 배출가스관련,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/방식을 미 규정과 조화
-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,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/보완에 합의

2018.03.27

개정협상 평가

1. 핵심 민감분야(red-line)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

-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,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(red-line)으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 관철

2.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

-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하여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

3.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

- 미국의 최대 대한 적자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①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장기유예, ② 우리 안전·환경기준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
-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이슈(원산지 검증,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)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으로 합의
- 우리의 관심분야인 투자자-국가 분쟁해결제도(ISDS)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하여 우리 관심사항 반영
- 일부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개정 추진으로 대미(對美) 섬유 수출애로 해소 도모

2018.03.27

개정협약 후 개정절차

- 향후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
-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,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.

